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400

2018. 2. 26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14번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과 남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64번 같은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 면 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유동광고 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자를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수거보상제도 의 효과를 높이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 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하고(안 제4조제4항),

-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며(안 제11조제2항),
-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 터 이상의 건물

제28조제2항 전단부 중 "구청장"을 "시장ㆍ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대안)

혂 햇 개 정 안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4)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 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 행령」에 따른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②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 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 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국토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 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 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2. ~ 4. (생략)

③、④ (생략)

제거 등)

-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 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2. ~ 4. (현행과 같음)
- (3)、(4) (현행과 같음)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 거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구청장-